

의안번호	2219164
의 퇴 인	오세희 의원
회 답 일	2026. 7. 21.
추계번호	26A252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2항제11호 신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11.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15조의2 신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 1.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 2. 집적지구 내 공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 3. 집적지구 운영 관리 및 평가 - 4.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19조제3항(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21조 신설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기반 조성 및 제조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1. 제조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 2. 제조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 제조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지원 -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5	안 제22조 신설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 정부는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1.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공동 유통 플랫폼 구축 - 2. 집적지구별 공동 물류 및 유통체계 구축 - 3. 도시형소공인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운영 - 4.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23조 신설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1. 제품의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지원 - 2. 품질·표준 인증 및 시험·검사 지원 - 3. 제품 성능 개선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제2항제11호 신설 (도시형소공인 지원 중 합계획의 수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의2 신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	
3	안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4	안 제21조 신설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5	안 제22조 신설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6	안 제23조 신설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의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공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설계·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관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함(안 제2조제3호)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¹⁾,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총 57곳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 [참고자료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제도 개요

[참고자료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현황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공정 개선,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 및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된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회계, 코드)	내용	2026년 제1회추경예산
소공인특화지원-지역소공인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4,320
소공인특화지원-클린제조환경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소공인 작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12,600
소공인특화지원-스마트제조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소공인의 공정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H/W)구입비,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임차비 등 지원	98,000
소공인특화지원-판로개척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8)	품질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보와 매출성장 기여	6,69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도시형소공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 개정안의 시행으로 확대 또는 신설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 지원사업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규모가 증액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확대 또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시점에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또한, 개정안에서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

[참고자료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제도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개요

- **(지정대상)** 동일업종의 소공인수가 동일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가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지정현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중기부가 57곳 지정(‘26.4월 기준)
- **(지정절차)** 지자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후, 중기부 지정
 - * **(신청)** 자자체에서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 등 수립 후 신청 → **(심의·의결)** 중기부 현장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정·고시)** 중기부 지정 및 고시 → **(지원)** 인프라 시설 구축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신청 자격 부여 및 선정 시 구축비 25억원 이내 지원(국비:지방비 = 1:1)
- 집적지구내 개별 소공인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스마트제조지원, 클린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우대 지원

<집적지구내 개별 소공인 우대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우대 사항
판로개척지원	유망 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가점
스마트제조지원	소공인의 공정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소프트웨어 등 지원	가점
클린환경조성	에너지 효율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 지원	가점

[참고자료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현황('26년 4월 기준, 총 57곳)

년도	연번	집적지구	집적지구명
'16 (3개)	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C24, C25, C29) 집적지구
	2	서울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3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17 (8개)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5	경기 시흥시 대야·신천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6	경기 양주시 남면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7	경기 용인시 영덕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8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9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10	강원 강릉시 사천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18 (5개)	11	강원 인제군 북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12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13	서울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14	경기 군포시 군포1동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15	경기 포천시 가산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16	대구 중구 대봉1동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19 (9개)	17	광주 동구 서남동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18	경남 김해시 진례면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비금속 광물제품(C23) 집적지구
	19	전북 순창군 순창읍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2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료품(C10) 집적지구
	21	경기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22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23	대구 중구 성내동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 집적지구
	24	충남 공주시 유구읍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섬유제품 제조(C13) 집적지구
	25	서울 중랑구 면목·상봉동	서울시 중랑구 면목·상봉동 패션·봉제(C14, C13, C15) 집적지구
'20 (10개)	26	대전 대덕구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금속 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27	인천 동구 송현동, 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동 금속 가공제품(C25), 전기 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28	전북 전주시 팔복동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금속 가공제품(C25) 집적지구
	29	경기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비금속광물(C23) 집적지구
	30	경기 광주시 초월읍, 오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가구(C32) 집적지구

년도	연번	집적지구	집적지구명
		읍, 광남동	
	31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5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5가 기타제품(C33)집적지구
	32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집적지구
	33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34	경북 영주시 풍기읍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35	경기 화성시 봉담읍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제품(C25) 집적지구
'21 (10개)	36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양말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37	서울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조원·미성동 의류봉제 집적지구
	38	대구 북구 노원동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안경·안경렌즈제조업(C27) 집적지구
	39	서울 양천구 신월동	양천구 신월동 가방제조업 집적지구
	40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인천 서구 오류·왕길 표면처리 집적지구
	41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 인쇄문화 허브센터
	42	충남 홍성군 광천읍	K-GIM(광천김) 식료품제조업 집적지구
	43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 야생차소공인 집적지구
	44	경기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김포시 소공인 집적지구
'22 (3개)	45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읍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46	경기 화성시 동탄5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5동 화성 K-반도체 베이스(C26, C29) 집적지구
	47	서울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봉제(C13, C14) 집적지구
'23 (3개)	48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신동 봉제(C14) 집적지구
	49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송인제1동, 송인제2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송인제1동, 송인제2동 의류봉제(C14) 집적지구
	50	전북 부안군 진서면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컷갈제조업(C10) 집적지구
'24 (5개)	51	강원 원주시 우산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집적지구
	52	대전 동구 정동·중동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중동 인쇄특화(C18) 소공인 집적지구
	53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섬유·봉제(C13·C14) 집적지구
	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생활도자(C23) 집적지구
	55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제조가공(C25·C29)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26 (1개)	56	서울 강북구 미아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패션·봉제(C14) 집적지구
	57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왕십리2동·행당동(행당1·2동 합산)·마장동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왕십리2동·행당동(행당1·2동 합산)·마장동 의류봉제(C14) 스마트혁신 집적지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